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50-8691~6 / 전송 773-4161

문서번호 치수30500-12 93

시행일자 1992.11.1

(제1안)

수신 내부 결재

참조

- 330

제목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시장방침 제 868호('92. 10. 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개정(안)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 :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

나. 입법 예고기간 : '92. 12. 5. ~ '92. 12. 24. (20일간)

다. 공고 방법: 시보에 고시 및 서울시보에 게재

라. 공고 일시: '92. 12. 5.

첨부 입법예고 공고(안) 1부. 끝.

(제2안)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임법예고

1.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이 마련됨에 따라 개정(안) 및 입법예고 공고(안)을 송부합니다.

첨부 1. 입법예고 공고(안) 1부.

2. 조례개정(안) 1부. 끝.

(제3안)

수신 공보관

제목 시보공고 및 서울시보에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안)이 마련됨에 따라 개정(안)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안)을 송부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

나. 입법 예고기간: '92. 12. 5. ~ '92. 12. 24. (20일간)

다. 공고 방법: 시보에 고시및 서울시보에 게재

라. 공고 일시: '92. 12. 5.

첨부 공고안 1부. 

수 과 장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2-330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992. 12. 5.

서울특별시장

1. 조례개정의 배경

시민의 건전한 휴식 공간인 한강 시민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시설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

2. 주요 내용

- 가. 한강에 설치된 시민 이용시설물에 주차시설을 포함하고 사용료를 징수토록 함.
- 나. 주차장 관리는 비영리법인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다. 주차료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노외주차장 요금을 적용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2. 12. 24.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치수과장 TEL 750-869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시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 개정 사유

시민의 전전한 휴식공간인 한강 시민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을 유효화하여 주차질 서 확립과 시설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

2. 주요 골자

- 한강에 설치된 시민 이용시설물에 주차시설을 포함하고 사용료를 징수토록 함.
- 주차장 관리는 비영리 법인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수 있도록 함.
- 주차료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노외주차장 요금을 적용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제131조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차시설

가.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수상이용 시설"을 "이용시설"로 한다.

제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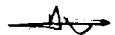
다만, 주차시설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 2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차장 요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노외주차장 요금을 준용하되 급지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第127條 (使用料)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이용 또는 財產의 사용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28條 (手數料) ①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委任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 法令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9條 (分擔金) 地方自治團體는 그 財產 또는 公共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住民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者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分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②詐欺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를 免한 者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免한 額의 5倍이내의 過怠料에, 公共施設을 부정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는 規定을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過怠料處分에 관한 節次는 第1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1條 (使用料등의 賦課·徵收, 異議申請)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은 公平한 방법으로 賦課 또는 徵收하여야 한다.

②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는 地方稅 徵收의 예에 의한다.

③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賦課 또는 徵收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申請할 수 있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異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이를 決定·통보하여야 한다.

⑤異議를 申請한 者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4項의 期間내에 決定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期間이 종료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또는 그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관할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의 方法과 節次등에 관하여는 地方稅法 第5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